

서 면 답 변 서

질의의원	신 교 선 위원	소 속	평 창 군 의 회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종합민원실장)	일 자	질의 : 2002년 8월 6일 답변 : 2002년 8월 7일
회 의	제9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 차 예결특위		

【 질의요지 】

○ 2002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은?

【 답변요지 】

◇ 손실보상의 배경

○ 최근 자가용차량 증가 및 주민생활수준 향상으로 놓여촌 버스 이용감소에 따른 경영난 가중으로 일부 비수익노선 운행기피등 파행운행이 예상되어 운행에 따른 결손액을 보상함으로써 업체의 경영난 해소로 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음.

○ 지원근거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,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

○ 지원대상노선 : 21개노선(1회 km당 평균 승차인원이 14인 미만노선)

○ 지원업체 : 4개업체

○ 손 실 액 : 533,700천원

○ 예 산 액 : 242,000천원

○ 1/4분기 지원액 : 60,500천원(지원율:45.96%)

○ 예산잔액 : 181,500천원

○ 업체별 지원내역

(단위:천원)

업 체 명	대표자	노선수	연간손실액	예 산 액	1/4분기 손 실 액	1/4분기 지 급 액	비고
계	4	21	533,700	242,000	131,630	60,500	
(주)평창운수	임문호	18	447,622		110,372	50,727	
(주)대영운수	정준수	2	63,961		15,771	7,248	
(주)동신운수	심원석	1	17,000		4,248	1,952	
(주)태창운수	구광서		5,117		1,239	573	

※ 2/4분기 손실보상금 : 2002. 8월말까지 서류확인후 지급예정

제5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

제51조 (재정지원) ①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(이하 "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"라 한다)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, 또는 융자할 수 있다.<개정 2000.1.28>

1. 자동차의 고급화·터미널의 현대화
2.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
3.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·개선
4. 낡은 차량의 대체
5.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·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·개선
6.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·장비의 확충·개선

7.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

②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·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<개정 2000.1.28>

1.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
2.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